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2. 9. 21 선고 2022가단20126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8. 31.

판 결 선 고 2022. 9. 21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20. 12. 2.자 양도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물건들을 인도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은 취지이다.

이 유

1.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9. 27.자 2021나13621호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

2016. 1. ~ 2017. 2. 사이 발생한 공사대금인「402만 원 및 그에 대한 2021. 10. 31. 이후의 지연손해금」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, C은 2020. 12. 2. 피고와 사이에 그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물건들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고에게 인도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~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,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(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7다45364 판결 참조), 설령 피고가 그 주장처럼(그러나 을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) C 내지 그 운영의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갖는 미지급 급여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위 물건들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, C이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채권자인 피고에게만 그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물건들에 관하여 담보를 설정해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,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2.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물건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, 결국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김호춘

별지